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질의·회시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질의·회시”는 고용보험의 적용, 고용보험료의 징수 및 고용보험의 세부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업 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으로부터 질의받은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회시한 내용을 주제별로 분리하여 실었다. 되도록 질의·회시한 원문 그대로 소개하였으나 그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례별로 독자적인 제목을 달고 원문을 축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어에 수정을 가하기도 하였다.

■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시 채용장려금 지원 관련 질의

퇴직한자의 퇴직사유가 정상적인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이직한 것이 명백하다면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사례

【질 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처리할 경우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 시】 채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으로 월 1

인 이상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다만, 채용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위에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라 함은 사업주 권고, 폐업·도산, 정리해고, 회사이전·체불·임금삭감, 계약기간만료(계약중단) 등으로 이직한 자이며, 채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고용조정의 의미는 사업주에 의해 인위적으로 실시되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및 비자발적인 명예·희망퇴직을 말함.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의 퇴직사유가 정상적인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이직한 것이 명백하다면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됨(고보68430-1120, 1999. 8.).

■ 사외파견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질의

사외파견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은 경기변동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사외파견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사례

【질 의】 공동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동 기

술의 제품화를 위하여 해당과제에 공동참여한 기업과 함께 실시 계약체결로 파견한 근로자의 사외파견지원금에 관한 질의

【회 시】 고용유지지원금(사외파견)은 경기의 변동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외파견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 사외파견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사외파견 계약이 이미 확정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공동개발사업의 명목을 빌어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므로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고보68430-1123, 1999. 8.).

■ **비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에 관한 질의**

비지정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례

【질 의】 지정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교육자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

【회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4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2주마다 거주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다만, 수급자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실업인정을 받아 훈련수강료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임의로 사설학원에서 수강하거나 해외어학연수를 포함한 외국어 과정 및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가 없음(실업 68430-217 1999. 9.).

■ **일당직으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원에 관한 질의**

일당직으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부정수급시 부정수금액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는 사례

【질 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1달여 정도 받다가 일당직으로 일자리를 구한 경우 일당직으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시】 실업급여는 실제로 실업한 날에만 지급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취업

이 되는 경우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당직으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액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함.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57조의 2에 의하여 자진신고자와 부정수급일이 7일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배액정수가 면제되는 바, 조속히 지방관서에 출석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함(실업 68430-225 1999. 9.).

■ **법정대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

법정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

【질 의】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관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 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근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는 바,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정리법상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그 보수 또한 법인이 정하며,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업

무를 수행하는 공의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하여 선임되는 점, 노무공급의 형태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점, 보수가 법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고보68430-4173, 1999. 7.).

■ **대학교교들의 고용보험 가입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대학교교들의 경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례

【질 의】 대학교교의 신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회 시】 고용보험법 제8조 제6호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이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적용대상 교직원을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

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로 규정한 바, 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
이 아니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를 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근무하는 사립학
교를 관할하는 노동관서를 고용안정센터에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등의 고용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확인 후 고용보
험에 가입이 가능함(고보68430-481, 1999.
8.).